Since 1946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ince 1946 I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Since 1946 I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Since 1946 I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기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6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장 신 호

장 신 호

visang

주식회사 비상교육
대표 양 태 회

양 태 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Since 1946 I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Since 1946 I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Since 1946